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도 기업 지원사업 참여 안내

(‘26.3., 전과정평가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성적인증(EPD) 제도**를 운영하며, **인증 제품군 다변화**를 위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목적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통해 인증기업의 국·내외 제품 판로 확대, ESG 경영 활동 지원 등 실질적 혜택 연계 방안 강화
 - 시장수요 중심의 **생활밀착형 소비재** 제품군에 **국민체감 인센티브**(그린 카드 에코머니 및 탄소중립 포인트 등) 연계
 - **수출규제 대응**이 시급한 **품목군**의 환경성선언(EPD)으로 대응력 향상
- ※ <붙임2> 환경성적표지 인증 시 연계 혜택(인센티브) 참조

□ 참여 대상

- 생활밀착형 소비재 및 수출규제 대응 제품군을 포함한 제품생산 기업
 - 단, **신규 인증·중점 제품군 생산 기업 우선 협약체결 및 가점 부여**

< 중점 제품군 예시 >

구 분		세부품목
소비재	생활소비	- 식품*, 음료, 생활용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활공간	- 가구, 인테리어 제품, 전기·전자 제품 등
생산재	생활간접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등
	건축자재	- 철강, 알루미늄, 단열재, 석고보드, 타일, 바닥재, 벽지 등

※ 규제 대응 시급성, 정책 연계성, 인증 취득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중점 제품군을 선정

* 1차 농수축산물 제외

□ 지원사업 개요 ※ <붙임1> 기업 대상별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참조

① 대·중소 상생협력 협약

- (사업내용) 기술원-대기업(중견기업) 간 업무협약을 통해 공급망 내 중소기업 제품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을 기술원과 협약기업이 공동으로 지원
- (참여대상) 협약기업(대·중견기업) 및 협력기업(중소기업) ※생활밀착형 소비재 중점
- (지원혜택) (대·중견기업) ESG 상생협력 활동, (중소기업) 컨설팅 비용 지원(협약 조건별 상이) 및 인증신청 수수료 감면(30%) 지원

② 수출기업 협약

- (사업내용) 수출규제 대응 및 해외판로 확대를 위해 수출(예정)기업이 기술원과 협약 체결 후, 수수료 감면 및 상호인정(MRA)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참여대상) 수출실적 보유 기업 및 수출예정 기업 ※중점 제품군 생산 기업 중점
- (지원혜택) 인증신청수수료 최대 30% 경감, 상호인정(EPD-Global) 원스톱서비스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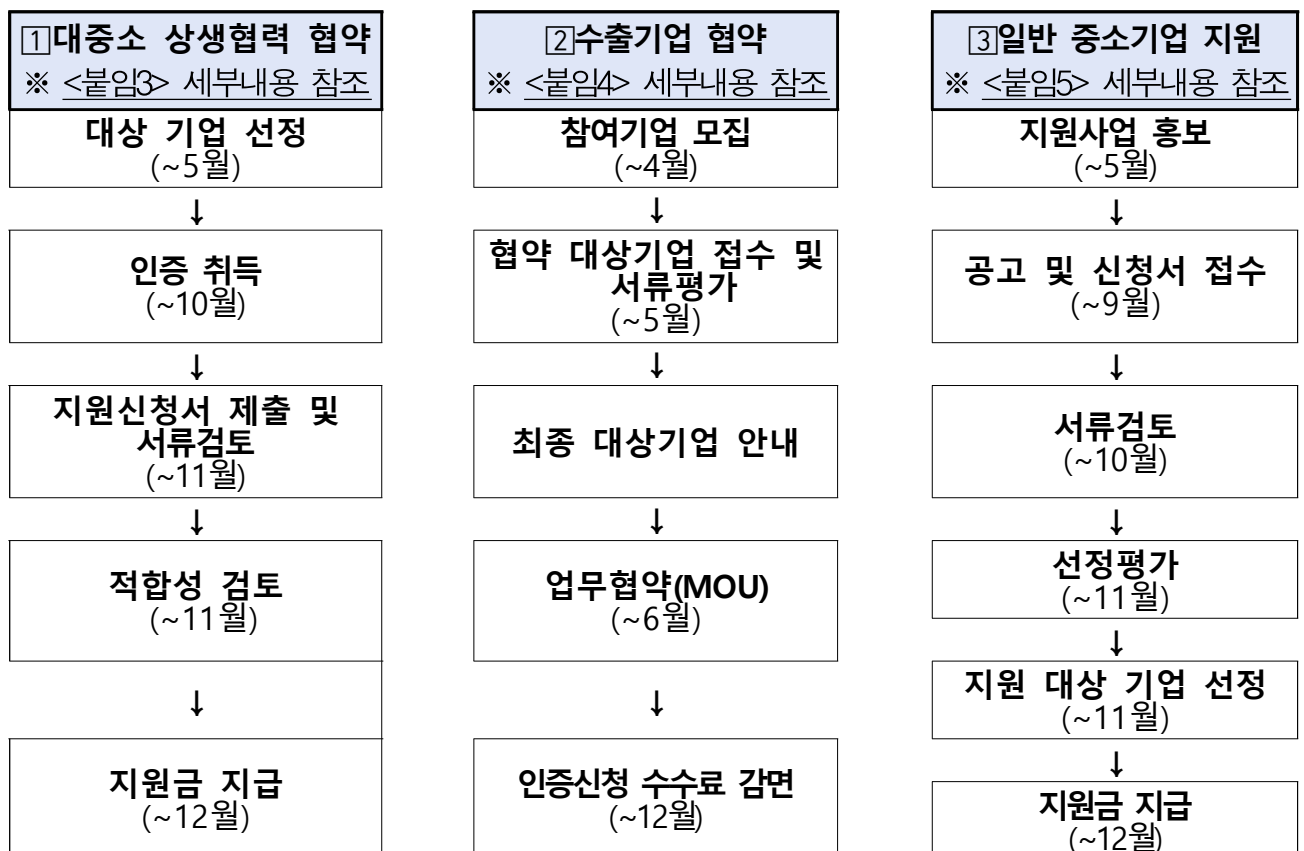
③ 일반 중소기업 지원

- (사업내용) 인증 취득을 위해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비용 지원
- (참여대상) 일반 중소기업 ※신규인증 및 중점 제품군 생산 기업 대상 가점 부여
- (지원혜택) 선정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의 컨설팅 비용(최대 10백만원) 지원

□ 추진 절차 및 신청

- (추진 절차) 각 사업별 <붙임>의 세부사항을 확인 후 <붙임6> 협약 참여 신청서(①, ② 협약 지원사업의 경우) 제출

※ '③ 일반중소기업 지원 사업' 은 9월 중 에코스퀘어(ecosq.or.kr) 별도 공고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제한

- 사업별 중복 참여는 가능하며, 항목별 최대 지원 혜택 적용
-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참여 불가

< 지원 제한 대상 >

- ◆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휴·폐업 중인 경우
 -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조업영업 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조치 이행명령 등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위반 내역이 있을 경우
- *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먹는물관리법(먹는 샘물류에 한함) 등

□ 신청서 제출 방법 및 문의

- 환경성적표지 지원사업 협약 참여 신청서<붙임6> 메일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epdkorea@keiti.re.kr, ☎02-2284-1589)
- 지원사업별 문의
 - 대중소 상생협력, 일반 중소기업 지원: 국민주 전문연구원(☎02-2284-1590)
 - 수출기업 협약: 문수립 전임연구원(☎02-2284-1575)

□ 온라인 설명회

<참여 QR코드>



- (일 시) 2026. 4. 9.(목), 14:00 ~ 15:00
- (참여방법) Zoom 플랫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 ※ '26.4.7.(화)까지 사전 질의 이메일 접수(epdkorea@keiti.re.kr)
 - * ID: 860 2644 2525 PW: 260429
- (상세내용)

시간	분	내용	발표자
14:00~14:10	10	○ 인사말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소개	정인태 실장(직무대리) (전과정평가실)
14:10~14:20	10	○ (사업안내1) 대·중소 상생협력 협약	김다솔 선임 (전과정평가실)
14:20~14:30	10	○ (사업안내2) 일반 중소기업 지원	
14:30~14:40	10	○ (사업안내3) 수출기업 협약	
14:40~14:50	10	○ 그린카드 및 탄소포인트 제도 소개	(탄소중립실천실)
14:50~15:00	10	○ 질의 응답(사전질의 및 현장질의) 및 맺음말	김다솔 선임 (전과정평가실)

※ 필요시 설명회 추가 개최 예정

- 붙임 1. 기업 대상별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2. 환경성적표지 인증 시 연계 혜택(인센티브).
3. 대중소 상생협력 협약 지원사업 소개.
4. 수출기업 협약 지원사업 소개.
5. 일반 중소기업 지원사업 소개.
6. 환경성적표지 지원사업(협약) 참여 의향서. 끝.

붙임1

기업 대상별 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가능 사업
①대중소 상생협력 협약
②수출기업 협약

제경비 감면	인증신청 수수료 감면	컨설팅 비용 지원	상호인정 원스톱 서비스
X	대기업(중견기업)-기술원 공동지원		X
X	○ (30%)	X	○ (건축자재 한정)

인센티브
- K-ESG 진단평가* 시, 환경(E) 영역의 환경라벨링 범주에서 '친환경 인증제품 및 서비스 비율' 항목 평가 근거자료**로 사용 * 친환경 인증제품 및 서비스 비율 = 인증 제품 및 서비스 매출액 / 조직의 총 매출액 ** '전자공시시스템' 상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생활소비재) - 그린카드 에코머니 생활밀착형 적립 상향(25%), 기후제품군 선정 시 적립 혜택 상향(30%) - (건축자재) 녹색건축인증 신청 시 배점 부여 - 해외 고객사의 제품 환경 정보 요구 대응 - 해외 제품규제 대응 - 상호인정 인증 취득 소요시간 단축

중소기업
참여 가능 사업
①대중소 상생협력 협약
②수출기업 협약
③일반 중소기업 지원

제경비 감면	인증신청 수수료 감면	컨설팅 비용 지원	상호인정 원스톱 서비스
○	대기업(중견기업)-기술원 공동지원		X
○	○ (30%)	X	○ (건축자재 한정)
○	X	○ (최대2개, 1천만원)	X

인센티브
- 대기업과 납품을 위한 제품 환경성적 산출 - 공공조달을 위한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 (생활소비재) - 그린카드 에코머니 생활밀착형 적립 상향(25%), 기후제품군 선정 시 적립 혜택 상향(30%) - (건축자재) 녹색건축인증 신청 시 배점 부여 - 해외 고객사의 제품 환경 정보 요구 대응 - 해외 제품규제 대응 - 상호인정 인증 취득 소요 시간 단축

[소비·생산 인센티브 강화]

- (국민체감 소비) 환경성적표지(EPD) 및 저탄소제품(녹색제품) 구매 시 「그린카드 제도」 에코머니 및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포인트 혜택 강화
 - (그린카드) 기존 제품(환경성적 5%, 저탄소 15%) 구매 시 기본 적립 혜택*에서 생활밀착형 제품, 기후제품군**인 경우 기본 혜택 상향 제공
 - * (저탄소제품) 생활밀착형 제품군은 기본 적립 혜택 상향(15→25%), 기후제품군인 경우 혜택 상향(15→30%)
 - **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인증제품 중 온실가스 감축 제품 및 으뜸효율가전제품 중 대상 제품(11개) 선정하여 프로모션 추가 30% 적립('26년 시범사업)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활동 중 '친환경제품 구매' 실천 시 인센티브(500원/건) 제공하여 그린카드 제도와 중복 수혜 가능
- (지속가능 생산) 녹색제품(저탄소제품) 민간·공공 시장 활성화 방안 강화
 - (민간시장 확대) 녹색제품(저탄소제품) 취급 온라인 유통 플랫폼* 지속 확대 및 수출지원사업(KOTRA 협업) 수출 판로 적극 지원
 -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생활밀착형 녹색제품의 종류를 생수, 휴지 등에서 생활용품, 가전 등까지 확대 적용
 - (공공시장 확대) 녹색건축인증 제도, 공공기관 녹색제품(저탄소) 의무구매 등* 제도 연계 강화
 - * 조달청 종합낙찰제 평가, 조달청 제한·지명경쟁입찰(저탄소) 포함 KOTRA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중견기업 글로벌 지원사업, 산업부) 가점(저탄소)

□ 사업 개요

- 공급망 내 협력기업의 환경성적 산정 비용 지원을 통한 공급망 전반의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 역량 강화 및 대·중소 동반성장 도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술원과 MOU 기업의 공급망 내 협력기업 중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을 받고 대상 기간('26.1.~'11.) 내 인증을 취득한 기업
- (지원방법) 협약기업의 공급망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수수료 감면 및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구분	기술원	MOU 협약 기업
지원 방법	• 인증 컨설팅 기업 정보 전달 • 컨설팅 비용 지원(50% 내외) • 인증신청 수수료 감면(최대 65%*)	• 지원 대상 기업 선정 • 컨설팅 비용 지원(50% 내외) •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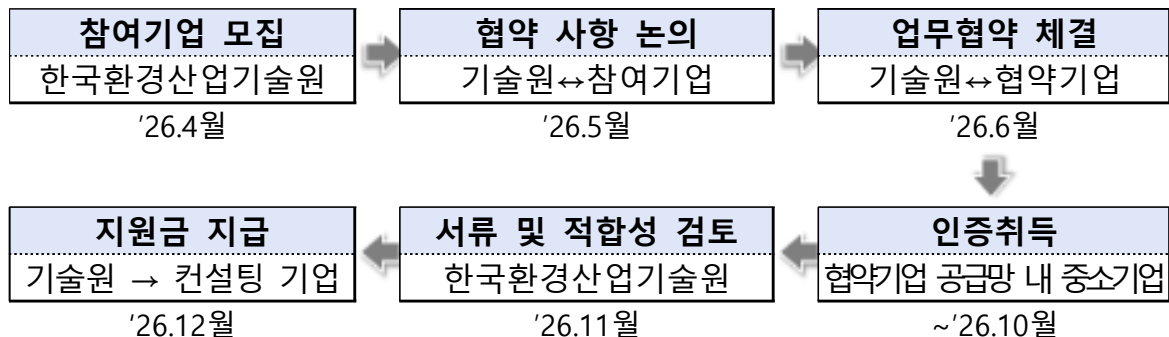
* 인증신청 수수료 중 제경비(약 50%) 면제 후 협력기업 수수료 추가 감면(30%)

** 협약기업별 인증신청수수료 지원 여부 및 방식은 협약서 내 명시

- (지원금액) 공급망 내 협력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제품별 최대 지원금액(컨설팅 비용)			
인증구분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세부유형	최초	파생, 갱신, 변경	최초, 파생, 갱신, 변경
지원금액	5백만원	2.5백만원	2.5백만원

□ 지원 세부 일정



□ 사업 목적

- 수출규제 대응이 시급한 품목군을 생산 기업 대상 제품 환경성 선언(EPD)을 통해 해외 고객사 대응 및 환경 규제 대응력 향상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중점 제품군 중 ①수출 실적을 보유하거나 실적은 없으나 ②제품 환경 규제 대응 대비가 필요한 협약기업
 - (수출 제품^①) 수출 실적이 있는 제품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통한 제품의 환경·탄소 정보 제공 등 해외 고객사 대응이 필요한 기업
 - (규제 대응^②) EU 에코디자인·디지털제품여권(DPP) 등 해외 제품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사전적으로 인증 확보가 필요한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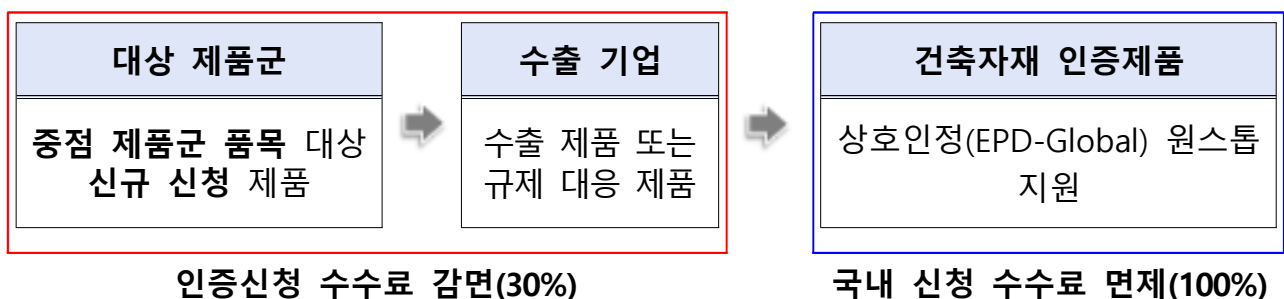
< 중점 제품군 예시 >

구 분		세부품목
소비재	생활소비	- 식품*, 음료, 생활용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생활공간	- 가구, 인테리어 제품, 전기·전자 제품 등
생산재	생활간접	-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부품 등
	건축자재	- 철강, 알루미늄, 단열재, 석고보드, 타일, 바닥재, 벽지 등

※ 규제 대응 시급성, 정책 연계성, 인증 취득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중점 제품군을 선정
* 1차 농수축산물 제외

- (지원 내용) 인증 수수료 감면(30%) 및 상호인정(EPD-Global) 원스톱 지원 및 국내 신청 수수료 면제(100%)

< 인증 제품 지원 내용 >



※ 상호인정 원스톱 지원은 인증기관(EPD-Global)과 협의된 건축자재 제품군만 적용

□ 신청 및 접수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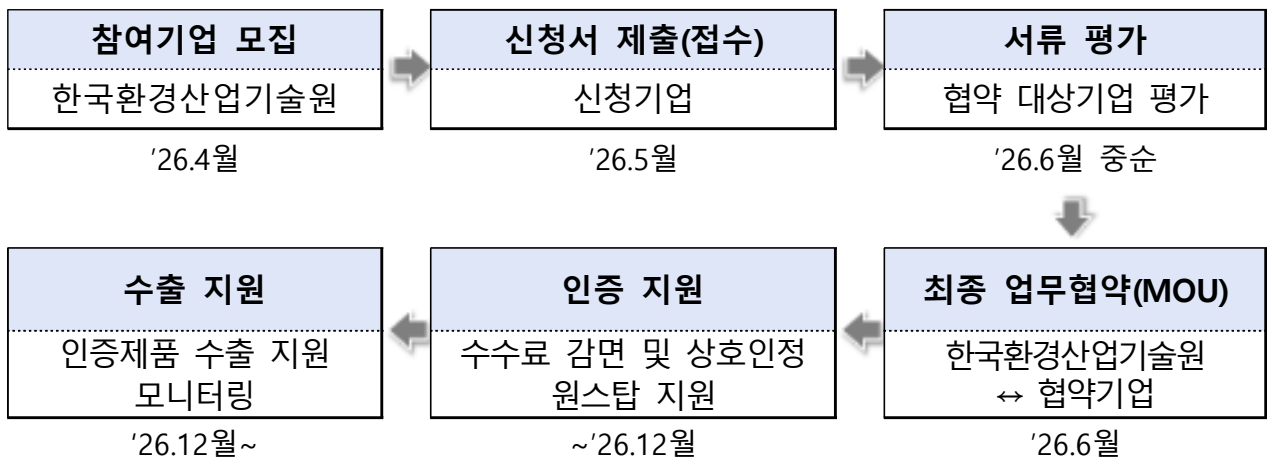
- (신청 기간) 기한 내 접수·선정된 기업은 업무협약(MOU) 진행 예정('26.6.)
 - (사전 조사) 2026년 4월 1일(수) ~2026년 4월 30일(목)
 - (신청 접수) 2026년 5월 1일(금) ~2026년 5월 31일(일)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내 참여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제출

< 신청 제출 서류 >

구 분		신청서류
중점 제품군	수출제품	- (사전조사) 참여 의향서 ※ 추후 신청서 접수시 제출 필요(제품설명자료, 수출실적증빙(수출신고필증 등))
	규제대응	- (사전조사) 참여 의향서 ※ 추후 신청서 접수시 제출필요(제품설명자료, 수출계획서, 규제대응설명자료)

※ 선정기업은 사업 참여 이후 수출 실적 및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협조

□ 지원 세부 일정



□ 사업 개요

- 중점제품군·저탄소제품 인증 확대 및 산업계 ESG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의 환경성적 산정 비용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컨설팅을 지원받고 대상 기간('25.10.~'26.9.) 내 인증을 취득한 기업
-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 단, 신규 인증·중점 제품군 생산 기업 별도 가점 부여

항목	저탄소제품	LCI DB 개발 참여*	작성지침 개발 참여*	매출액	중복지원 여부*
배점(점)	20	10	10	30	30

* 각 항목별 기간은 지원사업 공고 시행 연도 기준 3년 이내에 한함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개 제품, 최대 10백만원 지원

제품별 최대 지원금액(컨설팅 비용)			
인증구분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세부유형	최초	파생, 갱신, 변경	최초, 파생, 갱신, 변경
지원금액	5백만원	2.5백만원	2.5백만원

□ 지원 세부 일정



볼임6

환경성적표지 지원사업(협약) 참여 의향서

구분	☐ 대·중소 상생협력 협약 ☐ 수출기업 협약			
신청기업	기업명	예시) 환경산업기술원	사업자번호	예시) 11-11-11
신청제품	제품군	예시) 음료수	제품명	예시) 맛있는 음료수
신청자 현황	성 명	예시) 홍길동	이메일	예시) ABC@ABC.COM
	연락처	예시) 02-1234-1234 / 010-1234-1234		
본 신청인은 환경성적표지 지원사업 신청을 확인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담당자 (인)				